

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 제출서류

- ※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7.26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반드시 '상세'로 발급받으시기 바람.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서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반드시 "상세"로 발급받으시기 바람.

구분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공동 서류	서약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등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
	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)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
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-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
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•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•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공고일 현재 혼인중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
	소득세 납부입증서류	본인	• 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
	해당자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/ 만19세 이상 세대원
소득증빙서류		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(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원의 소득입증서류)
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출입국사실증명서		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	•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•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증빙서류		본인	•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(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) ※ 근로자가 아닌 경우 :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	직계비속	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	직계존속	•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"전체 포함"으로 발급)
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•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본인/배우자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비사업자 확인각서 복무확인서		본인	•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/ 견본주택 비치
부동산 소유 현황	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 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(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)
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	※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아래 서류 추가제출		
	위임장	본인	•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/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발급분에 한함 (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) ※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대리인 신분증/인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
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•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당첨사실 소명자료	본인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

□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확인 및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	* 해당직장 *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*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	*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*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(사본)	*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	* 국민연금공단 *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(사본)	* 국민연금공단 *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 *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* 세무서 *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* 해당직장 * 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(건본주택에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* 건본주택	

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

▣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* 해당 직장 * 세무서 * 건강보험공단
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※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* 해당 직장 * 세무서

▣ 자산보유기준

구분	자산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3,100만원 이하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flex-start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 margin-right: 10px;">건축물</div>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3D3D3;"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건축물 종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주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독주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택 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div> </div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flex-start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 margin-right: 10px;">토지</div>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농지법, 제210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군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「축산업,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(개별공시지가 기준) </div> </div>													

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동산 소유현황 등

▣ 부동산 소유현황 등(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(※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)
	필수	추가(해당자)			
부동산 소유현황 등	0		부동산소유현황	본인, 세대원	*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발급기관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
	0		등기사항전부증명서	본인, 세대원	*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 소유에 따른 등기사항발급 - 발급기관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
	0		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② 재산세 과세 내역서(건축물)	본인, 세대원	* 부동산자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- 발급기관: 주민센터(본인 신분증 지참)
	0		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(토지)	본인, 세대원	* 부동산자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- 발급기관: 정부24 또는 주민센터(본인 신분증 지참)
	0		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축산업허가증 등(부동산자산 제외사항)	본인, 세대원	*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, 구, 읍,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이면서, 농업인 및 농지 소유자 * 농업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- 발급기관: 정부24 또는 주민센터(본인 신분증 지참) ② 해당 농지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- 발급기관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* 축산업 ① 축산업 허가증 ② 해당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(초지) - 발급기관: 토지e음(www.eum.go.kr)>토지이용계획>지번입력>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③ 해당 축산업 사업장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- 발급기관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
	0		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(부동산 자산 제외사항)	본인, 세대원	*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*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된 경우 등 제한을 받는 경우 ① 해당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- 발급기관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② 해당 사진 ③ 해당 토지이용계획 - 발급기관: 토지e음(www.eum.go.kr)>토지이용계획>지번입력>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* 신규 분양권 등(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) ※일반자산가액으로 분류되므로 포함되지 않음